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9. 11. 대전광역시장

2. 건 명: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

3. 안건요지 : 따 로 붙 임

4. 검토의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8년 10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환 구 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8년 9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임.

조례안 세부내용을 보면,

○ 안 제2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함.

이상과 같이 조례안 검토결과,

○ 본 개정조례안은 2007. 12. 21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이 「농업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되어 2008. 6. 22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,

대전광역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
○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그 내용과 목적사업이 유사하므로 감사원 및 행정자치부에서도 통합운용을 권고한바 있으며,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에서 지적하였 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,

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한 내에 두 기금을 통·폐합하여 개별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남용을 방지하고 기금 통합운영에 따른 자금 활용 극대화로 기금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